

(知)(的)(所)(有)(權)(紛)(爭)(事)(例)

포스턴交響樂團指揮者傳記事件

—公的人物肖像에 權威權有限—

<1947年 뉴요크州地法判決>

1. 原 告: 쿠제비키

(포스턴交響樂團指揮者)

2. 被 告: 出版社

3. 事件概要

2次大戰 前後 포스턴交響樂團에 쿠제비키라는 指揮者가 있었으며 어느 出版社가 쿠제비키의 承諾없이 그의 傳記를 출간하려 하였으나 原告에 의해 出版中止訴가 提起되었다.

원고의 主張인 즉 自己의 승락없이 그의 寫眞이 카버나 出版物中에 使用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自身的生涯와 音樂生活에 대하여 誤記뿐 아니라 잘못 描寫되어 있다. 더우기 異議있는 個所, 實質이 아닌 部分, 虛構, 名譽毀損의 部分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 原因을 根據로 뉴욕州市民權法50條, 51條의 權威條項을 들어 出版中止命令을 申請하기에 이른 것이다.

4. 判決要旨

公的人物이건 아니건 간에 뉴스의 主題가 되는 人物에 權威의 適用은 없다. 嚴密한 뉴스가 아니라도 知識을 주는 것과 教育的인 것에 대하여生存하고 있는 인물의 姓名이나 肖像을 使用하는 데에 權威權의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출판에서 초상과 사진은 主題와 關聯하게 되면 그 사용이 正當化되고 또 초상과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若干의 정당한 公的利益을 保

有하게 된다.

원고는 重要한 公的人物이고 그의 音樂家로서의 顯著한 功績때문에 恒常 公衆의 눈에 띠이고 있으며 그의 一生은 一般의 關心事이다.

權威條項은 公的人物의 전기를 만들 때 그 인물의 性格上 虛構가 있고 小說化하였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提訴된 冊은 전혀 허구의 것은 아니며 진실되지 않은敘述이 包含되어 있어도 貂幎의 分類에는 들 수가 없다. D. Altomonte v. New York Herald Co事件에서도 高法은 50條 및 51條下에서는 원고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 虛偽의 이야기 거리는 원고에 起因한 것일지라도 起訴原因은 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著者가 가리킨대로 쿠제비키는 自己生活을 위하여 房을 갖지 않고 음악과 그의 誠實한 아내와 協力者에의 獻身이 있을 뿐이었다. 同時代의 事實敘述에는 몇 가지 誤謬가 있어 信賴性이 缺如된 점도 있다.

이 책에 포함된 事實은 원고가 지휘자로서 勝利者였음을 證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휘자로서의 일이 항상 優雅하고 明朗한 雾闇氣에 찬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으나 이를 著者は 讀者에게 밝히려 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가 원고의 音樂史 position와 評價에 冷酷하였다. 따라서 원

고가 极히 感受性이 鏡敏하였다던 不快感을 느끼게 될敘述이 있고 또 원고는 名譽毀損의 部分을 證明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의 審容을 짓밟을 念慮가 있을 만한 점을 仔細히 公開하지는 않았으며 節度의 感覺에 반하지도 않았고 또 일반의 關心의 對象이 될 情報를 正當하게擴散시키는範圍를 넘을 만한 것도 없다. 따라서被告의 전기책은 市民權法50條와 51條에 該當되지 않는다. 또若干의 賈誤이 있다 해도 社會의 良識의範圍內이며 肖像權의 問題에 關聯하여 公的人物의 사진을入手한 자는 新聞, 雜誌, 書籍에複寫할 權利가 있을 뿐 아니라 契約不履行이나 不法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決하였다.

에너지의
國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